

[별표 4] <개정 2009.11.2>

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(제9조 관련)

1.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"군함의 항로 방해"란 보호구역 안에서 어망·부유물, 그 밖의 수중장애물의 설치나 선박의 항행·정박 등으로 해군함정의 출입항 훈련, 그 밖에 항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.
2.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"이란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.
 - 가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
 - 나. 「선박안전법」 제41조에 따른 위험물 중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물
 - 다. 「개항질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
3.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설비 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통신설비로서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전기·전자기기류
 - 나. 통신설비 외의 설비로서 10킬로헤르츠 이상의 고주파전류를 사용하여 50와트를 초과하는 각종 설비
 - 다. 전기용접기·정류자부전동기 또는 인버터·컨버터 등의 전력변화장치를 사용하는 설비
 - 라. 가공송전선로·가공배전선로·가공배전선로
 - 마. 발전소, 변전소, 100킬로볼트 이상의 고압전력선의 설치 및 이에 준하는 전력시설

바. 전기를 이용하는 공업시설

사. 철도, 전기철도, 궤도 2차선 이상의 포장된 자동차 도로 및 활주로

아. 통신시설의 설치지점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매설하거나 설치하는 철관, 철근, 철선, 철 구조물 및 건물·공작물·가설물의 설치, 토성의 구축, 절토, 수면의 변경, 수목의 재배

자.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양각 2도 이상의 각종 설비 및 건축물

차. 통신시설의 설치지점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는 1제곱킬로미터당 444세대(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1,776세대) 이상의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상업시설